

천안 백석 센트레빌 파크디션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 천안 백석 센트레빌 파크디션 건본주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건본주택 관람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com>)를 통해 분양 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3도 이상일 경우(당 건본주택 입구 설치 체온측정기 기준).
- 입장 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천안 백석 센트레빌 파크디션은 (<http://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com>) 및 상담전화(1522-3518)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은 「신택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에스에이치메이드,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 2021.03.09.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1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19.)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지속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검수	계약체결
일 정	05월 30일(화)	05월 31일(수)	06월 01일(목)	06월 08일(목)	06월 10일(토) ~06월 14일(수)	06월 19일(월) ~06월 21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 ~ 17:00)	(10:00 ~ 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5)	

※ 서류검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법령 및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4.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 17472호(2023.05.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4-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 27층, 4개동 총 3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76세대(일반[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64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039	01	084.8100A	84A	84.8100	26.9869	111.7969	36.2805	148.0774	45.3741	183	18	18	33	5	16	90	93	8
		02	084.9800B	84B	84.9800	27.0254	112.0054	36.3531	148.3585	45.4651	175	17	17	31	5	16	86	89	8
	합 계										358	35	35	64	10	32	176	182	16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처리 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타입	공급 세대수	동(라인)	공급개요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총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총)합계	1차	2차	1차 (20%)	2차 (20%)	3차 (2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후 1개월(內)	2023-08-24	2023-10-24	2023-12-22			
84A	183	101동, 102동, 103동, 104동 (2호)	2층	4	169,954,080	248,445,920	418,400,000	10,000,000	31,840,000	83,680,000	83,680,000	83,680,000	125,520,000		
			3층	4	174,056,700	254,443,300	428,500,000	10,000,000	32,85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128,550,000		
			4-5층	8	178,118,700	260,381,300	438,500,000	10,000,000	33,85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131,550,000		
			6-9층	16	181,855,740	265,844,260	447,700,000	10,000,000	34,770,000	89,540,000	89,540,000	89,540,000	134,310,000		
			10-14층	17	183,764,880	268,635,120	452,400,000	10,000,000	35,24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135,720,000		
			15-19층	15	185,592,780	271,307,220	456,900,000	10,000,000	35,690,000	91,380,000	91,380,000	91,380,000	137,070,000		
			20-24층	15	187,461,300	274,038,700	461,500,000	10,000,000	36,15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138,450,000		
		25-27층	9	189,289,200	276,710,800	466,000,000	10,000,000	36,6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139,800,000			
		101동, 102동, 103동, 104동 (3호)	2층	4	173,447,400	253,552,600	427,000,000	10,000,000	32,7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128,100,000		
			3층	4	177,590,640	259,609,360	437,200,000	10,000,000	33,72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131,160,000		
			4-5층	8	181,774,500	265,725,500	447,500,000	10,000,000	34,750,000	89,500,000	89,500,000	89,500,000	134,250,000		
			6-9층	16	185,552,160	271,247,840	456,800,000	10,000,000	35,680,000	91,360,000	91,360,000	91,360,000	137,040,000		
			10-14층	20	187,542,540	274,157,460	461,700,000	10,000,000	36,170,000	92,340,000	92,340,000	92,340,000	138,510,000		
			15-19층	19	189,411,060	276,888,940	466,300,000	10,000,000	36,630,000	93,260,000	93,260,000	93,260,000	139,890,000		
			20-24층	15	191,279,580	279,620,420	470,900,000	10,000,000	37,090,000	94,180,000	94,180,000	94,180,000	141,270,000		
		25-27층	9	193,148,100	282,351,900	475,500,000	10,000,000	37,55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142,650,000			
		84B	175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호)	2층	4	173,772,360	254,027,640	427,800,000	10,000,000	32,780,000	85,560,000	85,560,000	85,560,000	128,340,000
					3층	4	177,915,600	260,084,400	438,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131,400,000
4-5층	8				182,099,460	266,200,540	448,300,000	10,000,000	34,830,000	89,660,000	89,660,000	89,660,000	134,490,000		
6-9층	16				185,917,740	271,782,260	457,700,000	10,000,000	35,770,000	91,540,000	91,540,000	91,540,000	137,310,000		
10-14층	20				187,867,500	274,632,500	462,500,000	10,000,000	36,25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138,750,000		
15-19층	15				189,736,020	277,363,980	467,100,000	10,000,000	36,710,000	93,420,000	93,420,000	93,420,000	140,130,000		
20-24층	15				191,645,160	280,154,840	471,800,000	10,000,000	37,180,000	94,360,000	94,360,000	94,360,000	141,540,000		
25-26층	6			193,513,680	282,886,320	476,400,000	10,000,000	37,640,000	95,280,000	95,280,000	95,280,000	142,920,000			
101동, 102동, 103동, 104동 (4호)	2층			4	177,306,300	259,193,700	436,500,000	10,000,000	33,65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130,950,000		
	3층			4	181,571,400	265,428,600	447,000,000	10,000,000	34,7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134,100,000		
	4-5층			8	185,836,500	271,663,500	457,500,000	10,000,000	35,75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137,250,000		
	6-9층			16	189,695,400	277,304,600	467,000,000	10,000,000	36,700,000	93,400,000	93,400,000	93,400,000	140,100,000		
	10-14층			20	191,726,400	280,273,600	472,000,000	10,000,000	37,2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141,600,000		
	15-19층			20	193,635,540	283,064,460	476,700,000	10,000,000	37,670,000	95,340,000	95,340,000	95,340,000	143,010,000		
	20-24층			14	195,544,680	285,855,320	481,400,000	10,000,000	38,140,000	96,280,000	96,280,000	96,280,000	144,420,000		
25층	1			197,453,820	288,646,180	486,100,000	10,000,000	38,610,000	97,220,000	97,220,000	97,220,000	145,83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100A	084.9800B
약식표기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일체는 약식으로 표현 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유의사항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토지비 감정평가 및 토지비 가산비용,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통해 산정함.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등 제반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공급금액에는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과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향후 사용승인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음.
- 중도금은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 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불가피하게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 및 사업주체의 사정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제외한 금액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음.(단, 입주시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납부약정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금액의 일부를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별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출불가 및 대출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로 물을 수 없음.(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을 일체 주장할 수 없음)
- 법규의 변경 및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청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락하는 경우는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 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행사를 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84B 타입이 설치될 예정이며 84A 타입은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모델하우스 내 비치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모형 또는 이미지, 분양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취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4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3	6	
	중소기업 근로자	4	5	9	
	장애인	충청남도	3	3	6
		대전광역시	2	1	3
		세종특별자치시	2	1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	17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31	6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16	16	32	
합 계		90	86	1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71 1177 2119 1362">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일반특별공급 항목		추천기관	담당과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재대군인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6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 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3.02.28.)]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단 민간택지는 9%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04.01. ~ 06. 30.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불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4.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3.02.28.)]에 따름.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드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제10조 제1항 관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총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음.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종전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

IV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5.30(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5)
일반공급	1순위	2023.05.31(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3.06.01(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u>청약자가 원할 경우</u>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각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신청자가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인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

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06.08.(목)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6.19.(월) ~ 2023.06.21.(수) (10:00~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5)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계약체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법령 및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6.08(목) ~ 2023.06.17(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6.0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유의사항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2023.06.10.(토)부터 ~ 2023.06.14.(수) 10:00 ~ 17:00까지
대상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처	당사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5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체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법령 및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계약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에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으로 당첨되신 분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신청자격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자격검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가정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약 가정제 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최근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당첨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위임장	청약자	- 해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분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가능)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서명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건분주택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취급 및 활용 동의서	본인	- 건분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은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복무확인서	본인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단으로 대신함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 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혼인가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건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납부입증 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및 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최근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타(가점 확인 서류)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당첨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제3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대리인 신청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서명가능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근로소득지급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세무서 ▪ 등기소
	법인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비치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해당직장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 홈텍스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 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납부자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불가자에 해당할 경우)	▪ 세무서 ▪ 해당직장 ▪ 홈텍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필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6.19.(월) ~ 2023.06.21.(수), 3일간,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5번지 건본주택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중도금, 잔금납부일정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은행	317-0026-6451-01	(주)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납부약정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변경은 대리은행의 승인 하에 대리은행 및 수탁자의 명의로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가능함.
- 계좌 입금시 기재예시(ex.101동 1004호, 계약자명: 홍길동 ▶ 1011004홍길동)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완료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계약시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의거하여 제출을 의무화 함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e-revenuestamp.or.k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서명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제24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로 관리가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안시 및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외)는 소비자(분양자와)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종당첨 및 부적격자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 및 금융비용등은 별도 지급되지 않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미납 또는 일부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고, 입주시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시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대출 방식 포함] 및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대출기관 미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한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는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 은행을 알선하여 분양계약자가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해야 하고,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 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개시일 확정시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GX룸,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북카페, 시니어하우스(경로당),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실외), 지상/지하 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주차장(입구높이 / 층고)

- 지상 1층 : 5.0~7.59m, 지하 1층 층고 : 5.3m, 지상 세대 층고 : 2.8m (최상층 2.90)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관련 공사비 안내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안내

- 발코니확장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납부지정일자에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확장비용	농협은행	317-0026-6451-01	(주)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004호, 계약자명: 홍길동 ▶ 1011004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5%)	중도금(5%)	잔 금(9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입주지정일
84A	17,457,000	872,800	872,800	15,711,400
84B	19,750,500	987,500	987,500	17,775,500

※ 발코니 확장 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확인서상(2023.03.31) 실행 공정률 약 42.84% 공정 진행으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정 진행 등의 사유로 해약, 취소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 및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 분양홍보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할 예정임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들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안방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고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하향식 피난사다리와 난간대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비율은 5%이나, 백원미만 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잔금 납부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비(유상옵선)

◎ 마감재 옵션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합계
전 타입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00,000	1,090,000	1,290,000
	[벽 마감 특화(거실, 주방, 복도)] 우드시트판넬	300,000	1,950,000	2,250,000
	[거실 아트월] 대형타일(600x1200)	100,000	140,000	240,000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LX미스티클라우드)	100,000	640,000	740,000
	[주방 상부 유리장식장] (조명형)	100,000	210,000	310,000
84A	침실1 불박이장	200,000	1,140,000	1,340,000
84B	침실1 불박이장	300,000	2,000,000	2,300,000

- 마감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거실 아트월 대형 타일 유상옵선의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시 시공성 및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은 본 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은 마감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옵션 미선택시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로 시공됨.
- 유상옵선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침실1 불박이장 선택시 설치되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가구마감,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의사양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침실1 붙박이장 미선택시 벽체로 시공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 상부 유리장식장(조명형) 미선택시 상부장 전체가 지정 메탈PET 도어마감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범위만 지정 패턴 유리마감으로 시공됨 .
- 벽 마감 특화 유상옵션 미선택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우드시트판넬 마감부위는 벽지로 설치되며, 거실 소파 뒷벽은 포인트 벽지로 설치됨.
-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가구마감,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의 사양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수있음.

◎ 가전기기 옵션 (LG or 삼성 중 택1)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제품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합계
전 도입	인덕션 3구	LG전자(BEI3GTBI)	200,000	890,000	1,090,000
		삼성전자(NZ63T5701AK)	100,000	560,000	660,000
	식기세척기	LG전자(DUB22SB2)	200,000	1,050,000	1,250,000
		삼성전자(DW60T7075FS)	200,000	840,000	1,04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LG전자(S715SI24B)	700,000	5,750,000	6,450,000
		삼성전자(BRS685050SR)	700,000	5,430,000	6,13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수납장	LG전자(K221PR14BL1/R1)	300,000	1,930,000	2,230,000
		삼성전자(RQ22K5L@01EC)	300,000	1,850,000	2,15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수납장	LG전자(S715S124B, K221PR14BL1/R1)	900,000	7,700,000	8,600,000
		삼성전자(BRS685050SR, RQ22K5L@01EC)	900,000	7,310,000	8,210,000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수납장 옵션 선택시 하부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으며, 미 선택시 냉장고를 배치할 공간과 상부장만 제공됨.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수납장 옵션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도어 열림 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음.
-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시 수납가능한 수납장이 설치되며 도어 열림 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옵션에 따라 콘센트의 설치유무,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가전기기(시스템 에어컨 제외) (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마감재 및 가전기기	농협은행	301-0327-1000-91	동부건설(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공사의 별도 통보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 설치대금(계약금, 잔금)의 납부시기는 별도의 유상옵션 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고지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합계
전 타입	ALT-1. 거실 + 주방 + 침실1	600,000	4,700,000	5,300,000
	ALT-2. 거실 + 주방 + 침실1,2,3	700,000	7,000,000	7,7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와 천정내부 배관설비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함.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해 개별설치가 가능한 냉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는 제공금액 및 자재발주, 납품일정 등의 사유로 단위세대 시공사 시공사에서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중 선정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ALT-1 옵션 선택시 실내기가 설치되는 실 이외의 잔여실에는 천정 냉매배관만 설치되며, 실외기는 향후 사용성을 고려해 전실의 용량으로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ALT-1 옵션 선택 후, 추가적인 실내기 설치의 입주자 분입니다. 에어컨 브랜드는 기존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과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타 브랜드 실내기 설치 시 정상작동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시스템 에어컨	농협은행	317-0026-6451-01	(주)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시스템 에어컨 비용(계약금, 잔금)은 계약체결 전에 위 계좌로 납부지정일자에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시스템 에어컨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여타 선택품목(마감재 및 가전기기)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004호, 계약자명: 홍길동 ▶ 1011004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계약 이외 선택품목(마감재 및 가전기기(인덕션, 발트인 냉장고 등))은 시공사 동부건설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별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택품목의 하자보수 의무는 본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사에서 부담하며, 품목(사양,크기외),진행일정 등은 사업주체와는 일체 무관합니다.
- 공급계약과 별개로 추가선택품목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분양홍보물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표기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사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분양홍보물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종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전 선택 시공시 기본 가전제품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공정상 (2023.03.31.기준 공정을 약 42.84%)의 이유로 “23년 7월 1일”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제외)을 선택할 수 없으며, “23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공통사항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용도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음.
- 상기 세대당 공급 및 계약면적,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등으로 인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견본 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 또는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단, 소수점이하는 정산금액 없음)
- 고객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CG, 단지모형 등 분양홍보물에 반영된 사항이 본공사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 현황, 일조권,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전선주 외), 사생활침해가능여부, 약취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부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외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외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동)될 수 있음.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실시공 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를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음.
- 건축품질 및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 세대내 발코니 등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차량경사로 부분은 차량 입출차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1층에 제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연실에 접한 상부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 취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의 경우, 미관저해 및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타일졸논은 의장상 오픈졸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졸논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 배수구는 형별, 타일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소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세대내 실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전달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장건물, 전신주,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산업단지, 단지외부도로, 하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계약전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비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천안오성초”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천안1학군 서북부구역 중학교에 배치 가능하나,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동주택 입주인 전용시설이며, MDF실/방재센터,경비실 등 관리시설은 실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시공사 또는 신탁사, 위탁자와는 무관함.
- 견본주택 및 준공도서(건축허가도서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설계변경한 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치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본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악취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기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아파트 입주자(실사용자 포함), 근린생활시설 분양자 전원은 이의 제기없이 동의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주)한국토지신탁”과 “에스에이치메이드(주)”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주)한국토지신탁”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에스에이치메이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현장 여건(지질상태 외)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흠막이 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및 공법,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트메이션)의 기능.크기.색상.재질 등이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내 서측 폭2m 보도는 지자체에 무상양도 또는 기부채납할 도로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는 있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됨.
- 단지 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상1층 주차구획을 비롯한 전체 주차장 통제.운영은 준공후 각 관리주체가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공사/신탁사/위탁사와는 무관함.
- 각동간 인접한 동배치 설계 등으로 인해 공용부위(E/V홀,계단실 외) 및 거주공간에 소음피해,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다양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건물은 27층 규모의 고층건물로서 연돌효과에 의한 소음(바람) 및 민원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인지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파난사다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하향식 파난구 개폐시 당해 세대와 하부 세대 월패드를 통하여 거주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가 아닌 비상시에도 개폐가능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 필로티 상부세대(2층)에는 하향식파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사업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비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간판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주민공동시설, 엘리베이터, 실외기실, 환기구(환기시설), 간판/경관조명 등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불빛, 수증기, 시각적 간섭 등으로 조망권, 환경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및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배치 및 변경에 의해 호실별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건본주택 설치마감재가 단종, 품귀시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설치 가구 내 입주자 소유의 가전기기의 수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배선기기, 가스계량기 및 통신,분전반 단자함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영구배수시설 설치시 이로 인한 하(우)수도 사용자 및 유지비용의 부담주체는 입주자임.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흙막이가시철,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에 따라 입주시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트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보안등, 문주조명 등 경관조명으로 인접 세대 내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동선으로 인한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부위별 난간의 세부 디자인, 규격, 재질은 본 공사시 건본주택,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특화디자인에 따라서 타일마감에는 의장상 OPEN줄눈 적용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건본주택 /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건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홈페이지, 카달로그, VR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제시된 제시된 내·외부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분양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도로 등)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VR, 모형 및 홍보물 등에는 소비자의 당 건본주택 전시 세대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주방TV, 월패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통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 문 및 그릴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및 개폐방향은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임.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건본주택 전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함.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 조망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모형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문 및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문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위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터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분양홍보물,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홍보자료 (특화아이템 전시부스, 멀티비전, 인터넷 자료 등 포함), CG, 참고이미지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야간경관조명,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본 공사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 설치 세대내 설치된 전사용품, 전시조명, 스프링클러 등은 실제 시공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설계관련 주요사항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홍보물,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임함. - 건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후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 있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및 옥탑구조물, 전후면 외관, 축벽, 필로티(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내부 디자인 및 설치 위치 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축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시 사업주체인 (주)한국도지신타 또는 시공사 동부건설의 현장별 특화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또는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층의 구조 및 기초 형태, 크기, 철근배근 등은 굴토 후 지내력 등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각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상층의 FL레벨,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FL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널 구간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불가피하게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점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재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 및 맨홀 위치는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기부채납하는 부지와 연결된 지상층 단지내 시설물 일체의 마감형태가 건본주택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건본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임.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보안등,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경우 최종 사용승인시 크기, 규격, 위치, 재질 등이 건본주택 모형 및 인허가시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일체 이의제기할 수 없음. - 각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불가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비용의 부담주체는 입주자임.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건물 외관에 시공사의 CI, BI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수분양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인접한 세대는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동 색채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음. - 단지내 남,서,북측 조성되는 보도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방해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출원으로 대체되어 미시공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의 인접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 등으로 소음, 먼지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지상에 있는 시설에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 견본주택 모형, 분양홍보물 등과 실제 시공될 단지내/외부 난간 및 경계형태, 놀이시설(규격,재질,형태 등), 주민편의시설(위치,시설물 외) 등이 최종 사용승인시 입주자 동의 없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pad등의 설치로 단지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단지모형 미표시), 설치될 경우 위치이동이 불가하며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진동 등의 생활적 불편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디자인(입면, 옥탑, 축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 출입구 및 외부시설물(D/A, 자전거 보관소, 조경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각종 인종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마감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외관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축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법령 및 지자체 소음 관련 기준 미달 시 단지 내외부에 방음벽 설치가 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단지</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해당시)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동간간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악취,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있으며, 이로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단지 내 4개소(각 동 서측면) 위치하고 있고,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전거 보관소와 무인택배함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과 통합하여 설치되며,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근린생활시설 관리단 등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운영하여야 함.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획된 단지내 레벨이 일부 구간 주변 레벨과 차이가 있는 구간이 있으며, 차이가 있는 구간은 대지 경계에 옹벽 등으로 시공됨(주변부지의 시설 확충 또는 개선에 따라 옹벽 등의 높이는 변동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차영역을 면적별로 한정할 수 없음.(※주차장이용에 관한 통제/운영은 준공후 각 관리주체의 책임임) -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레벨차이에 의한 경계형태는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세대는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은 예폭시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주차 구획은 동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주동 코어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1층에 설치되며, 운영방안 및 사용요금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협의체에 의해 결정 및 납부되어야 하고, 충전설비가 설치된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으로는 전기, 통신, 설비 관련 맨홀 및 전신주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2의[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3등에 의거하여, 단지 지하층, 지상1층, 각 동 옥탑에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협의하여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단지내 CCTV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람 - 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주차구획의 개소 및 위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여름철 기후 특성상 밀폐되어 환기량이 부족할 경우,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 비율도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상적인 물을 배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시공 한계상 구배가 거의 없으므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모형 및 CG상 표현된 인근 도로 및 주변 건물의 현황은 주변의 도시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 포함) 등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에 경우 인근에 설치되는 구조물, 인접건물 및 조경등에 의해 세대내 시야가 가려 질 수 있으니 해당 부위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하부층 전면에 설치되는 D/A 및 각종 구조물에 의해 세대내 조망간섭, 악취,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성되는 주민공동시설의 적용 마감 및 프로그램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은 평상시 폐쇄되며 비상시만 개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 될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보안등,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동측 보행자 도로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 될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 -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 등의 공법, 재질,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이 노출되어 있음. -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 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 등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내 이동/관리동선에 의한 세대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장 남측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당 사업과 무관하며, 향후 인허가 절차에 따라 분양 홍보물 및 단지모형과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공사/준공시 남측 보행자 출입 통로 및 계단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외부에 생울타리 또는 철재난간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주동 외부에 선홍통이 노출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적용되는 CCTV의 화소수, 개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차량 출입구 및 보도 등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정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지상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동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또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근 단지, 주변도로 및 시설 등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집과 북카페옥상에 조성되는 휴게공간으로 인하여, 104동 저층의 일부세대에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탁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일부 축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및 옥상조형을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나 변경 될 수도 있음. - 이동통신설비 관련하여 중계장치가 지하1층 102동 통신실 내에 설치예정으로,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및 지상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마감재료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태양광 집광판 면적 및 각도, 세부 설치 위치 등은 현장시공 시 결정되므로 분양홍보물의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상층에 의자용 구조물, 인명구조공간, 구조안전공간, 야간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 경관조명 설치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에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103동 옥상에는 위성안테나 및 공청 안테나가 설치됨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주인 공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 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실별 기본 마감재(바닥, 벽, 천장 등)들이 설치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창호는 시공시 동등 이상의 성능(열관류율)을 만족하는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단지모형, VR홈페이지 등에 표현된 운동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겉수, 디자인, 구성, 사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조경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기부채납부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분양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등)처리될 수 있음. -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 범위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관상용으로 직접 이용이 불가한 시설로써, 음용 및 들어가거나 오르는 행위는 불가함. - 수경시설(석가산, 계류, 폰트)의 설치로 인하여 102동, 103동 인근세대는 조망,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조경,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필로티 구간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는 동에는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의 경우 그 적용여부와 적용구간 · 면적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DA, 전기pad등 구조물의 모양 및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상가의 경우 조경계획에 따른 상가 가림이 있을 수 있음.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향, 규격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무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는 Mock-up 세대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품목은 공판시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님.
-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위시타워 등) 설치시 창호 개폐에 간섭,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보일러 유지보수에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및 법적문제는 시공자가 아니며,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침실1,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부 및 단위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하층 세대, 최상층 세대, 기타층 세대 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본 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홍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시공부분 색상 매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됨.
- 본 공사시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주방액정TV, 조리기구선반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는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을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포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임.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욕실장, 샤워부스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제공 및 설치되는 빌트인 제품(쿡탑,후드 등)의 제품사양 및 제조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 인조대리석류(싱크대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은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 되는 관계로 본 공사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쿡탑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을림이 생길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유상옵션 선택시)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호실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그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안내된 호실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인접된 세대로 인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주방가구 일부구간(후드 상부장, 온수분배기 적용부 등)의 경우 수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 하부실의 시공 디테일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기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등 가전 사양에 따라 냉장고장 배치시 돌출정도가 다를 수 있음. - 옥상 하부세대의 경우 옥상 구조물에 의해 강풍, 강우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발코니 /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발코니의 외부 샷시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종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단열재 미부착 등으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로발생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함. -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발코니, 실외기실, 창호 상부 외벽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배관 설치 및 노출되며, 이를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 불가함. - 실외기실 갤러리창(루버)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임. - 발코니2(다용도실)의 외부 창호는 인접 주동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선 차단형 창호(고정 그릴창)로 설치될 예정(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이로 인한 각종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창호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도어포함)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도서(변경포함) 및 건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주방에 면하는 발코니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계단실 전실제연 조건 충족을 위해 일부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개폐시 당해 세대와 하부 세대 월패드를 통하여 거주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가 아닌 비상시에도 개폐가능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계약하여야 함. -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 모형등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전기 /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서리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 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마감자재의 제조사 및 모델은 해당 제조사의 사유로 인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및 악세서리는 세제 등 생활용품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전기분전반과 통신단자함은 침실벽면에 노출시공되며, 벽면에서 구조상 약간 돌출시공 됨.
-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홈네트워크 설비의 마감디테일은 변경될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월패드 설치위치는 거실벽면 타일 기본기준으로 시공되어 모델하우스 설치 위치와 약간 상이할 수 있음.
- 홈IOT는 기간사업자(KT, LGU+, SKT, 카카오 중 지정된 1개사)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업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서비스 및 연동되는 장치는 기간사업자 정책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홈IOT 가전제어는 설치되는 기간사업자와 연동되는 제품을 구입하여야만 연동되며 세대내 무선AP환경을 제공하여야만 가전제품이 연동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는 준공후 3년 무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며 3년경과후 기간사업자의 정책에 의해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 배기는 각 세대 외벽에 직배기로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의 환기구를 통해 악취,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 및 욕실 환기시스템은 외부 환경에 따라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태풍 등 강풍 및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의 제조사는 본 공사시 선정될 예정이며, 제조사에 따라 제품의 성능 및 시스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 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기시스템의 성능은 저하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시스템 가동시 운전소음이 단위세대 내로 전달 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 위생도기류 하부에는 제외됨.
- 욕실 세대내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총별 1개소의 단위세대 현관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하부층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 또는 필로티 상부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이로 인해 해당층에 세대 내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음.
- 각 세대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출동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의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계량기,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별 개별 보일러 설치로 인해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실내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다용도실(발코니2)에 건조기 설치시 세탁기와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고, 보일러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음.
- 기능상의 이유로 설계도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옥상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공용으로 사용되는 통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흡출기, 통기관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고층부 세대에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될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와 천장내부 배관설비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함.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해 개별설치가 가능한 냉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제공금액 및 자재발주, 납품일정 등의 사유로 단위세대 시공시 시공사에서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중 선정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
--	--

X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계약금액(원, VAT포함)	주소
주택건설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249,814,170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59, 1층(용전동)
전기	(주)하나종합테크	373,850,4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53, 3층 302호(화정동, 코스미온빌)
소방	(주)씨에이파트너스	110,0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605호
정보통신	(주)씨에이파트너스	308,0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605호

* 단, 상기계약금액의 경우 공사기간, 현장여건 등에 의해 불가피 변경(동) 가능함

▣ 택지감정평가 회사 및 평가금액

- 감정평가금액은 공동주택(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임

회사명	평가금액(원)	주소
(주)감정평가법인 이산 경기동부지사	157,644,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196, 608호(수내동, 퍼스티플러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3-101-0002600 호	₩ 115,452,61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내 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p>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p>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p>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p> <p>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p>	<p>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p>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p> <p>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p>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div> <p>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p> <p>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p>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주체(수탁사)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메이드	(주)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304호(청당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법인등록번호	161511-0264344	110111-1258220	110111-0005002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서울-080010호
 - 영업소 소재지 : (주)한국토지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승인번호) : 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 착공 : 2021년 9월 17일 착공신고
 - 준공(예정) : 2024년 2월
 - 공급 예정일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대지면적 : 16,963.0000㎡ (공동주택 16,259.8689㎡ / 근린생활시설 703.1311㎡)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자체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등 법령상 규제사항 없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주)한국토지신탁
 - 분양대행사 : (주)가온디앤디 (현장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메이드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메이드이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며,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한국토지신탁이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메이드 및 시공사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수분양자는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메이드와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메이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

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75

■ 분양문의 : ☎ 1522-3518 (견본주택)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오시는길(견본주택)]

